

---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상쟁점 법규운용기준

---

※ 이하 「공직선거법」은 ‘법’, 「공직선거관리규칙」은 ‘규칙’으로 표기하였음.

1. (예비)후보자가 의례적인 명절인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때에 (예비)후보자 신분을 표시하는 경우 법 제59조 제2호 후단 및 제82조의5를 준수하여야 하는지

⇒ (예비)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법 제58조 제1항 제6호의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경우 (예비)후보자 신분을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법 제59조 제2호 후단 및 제82조의5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할 것임.

2.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봉투 포함)에 해당 (예비)후보자의 사진을 게재할 수 있는지

⇒ (예비)후보자가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범위의 인사에게 발송하는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봉투 포함)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예비)후보자의 사진을 게재하는 것만으로는 법 제93조, 제254조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임.

3. 법 제105조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수인이 거리 등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확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 법 제105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수인이 거리 등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법 제59조 제4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법 제59조, 제103조,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임.

4. 선거사무장 등에게 선거운동 중 이동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 시 규칙 제59조 제2항을 적용하여 일비에서 교통편의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 후보자가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도중에 선거운동 장소를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59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일비에서 교통편의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함.

5.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 포함)가 지역 의견 수렴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최하는 옥내 주민간담회 내부에 행사명, 개최자 성명 등이 게재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지

⇒ 주민간담회 개최 장소에 행사 개최·진행에 필요한 통상적인 범위에서 행사명, 개최자 성명 등을 기재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임.

6. 입후보예정자가 출마선언 기자회견 개최 시 그 장소에 일시·장소, 개최자의 성명·정당명·슬로건 등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지

⇒ 입후보예정자가 언론인을 대상으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경우 그 장소에 기자회견 개최에 필요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시·장소, 개최자의 성명·사진·소속 정당명 및 사회 일반적·보편적 가치에 해당하는 슬로건 등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임.

※ 실외에서 개최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운용하나, 행사에 필요한 통상의 범위를 넘어 대형스크린 등을 이용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이 볼 수 있도록 홍보동영상을 상영하는 등의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법 제90조, 제93조, 제254조 등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임.

7. 입후보예정자 등이 옥내 행사(의정보고회·출판기념회·선거사무소 개소식 등)에서 축사·격려사를 하는 경우 확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 입후보예정자 등이 옥내행사에서 축사·격려사를 하면서 확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확장장치를 사용하거나 행사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선거운동 내용이 중심이 되는 등 실질적으로 집회의 방법으로 하는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법 제91조, 제10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음.

8.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직·성명 등이 게재된 윗옷을 착용하고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법 제90조,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임.

9. 법 제59조 제5호에 따라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는 경우 자신의 직·성명이 게재된 윗옷 또는 의례적인 문구의 어깨띠를 착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법 제90조,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임.

본 운용기준은 구체적 사안을 전제하지 아니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인바, 구체적인 행위양태 등에 따라 위법 여부는 달라질 수 있음.